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01
----------	-----

2018. 4. 5.(목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엄재창 의원 등 6인

나. 발의일자 : 2018년 3월 14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3월 22일

(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엄재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도내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민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4조)

○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(안 제5조)

○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교육·컨설팅 지원사업, 환경개선 사업,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 등 지원 사업 규정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전문위원 : 오문석)

- ‘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’은 도내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민박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」

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어촌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.
2. “농어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.
3. “농어촌민박사업”이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81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농어업·농어촌 및 농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안전관리)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·군수가 매년 실시하는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대하여 시·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·점검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·컨설팅 지원 사업
2. 농어촌민박의 안전·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
3. 농어촌민박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
4. 그 밖의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보고·검사) 도지사는 제6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제8조(다른 조례의 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, 관리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관련 사업자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민박사업자 대상 안전 및 서비스 교육에 따른 제비용

3. 관련조문

- 안 제6조 (지원사업)
 -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민박사업자 서비스 및 안전교육에 필요한 제반 경비 (사무관리비, 강사수당 등)
- 나. 추계의 전제 : 농림축산식품부 시·도별 예산 배정내역을 기초로 함
- 다. 추 계 결 과 :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세출 91백만원 정도 소요
- 라. 재원조달방안 : 국비 50%, 도비 15%, 시·군비 35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
세 출	91,000	18,200	18,200	18,200	18,200	18,200
서비스·안전교육	91,000	18,200	18,200	18,200	18,200	18,200

6. 작성자 : 충청북도 농업정책과장 이 강 명(220-3510)

관 계 법 령

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“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5. “농촌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가. 읍·면의 지역

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, 농업 관련 산업,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
□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산업“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.

가. 어업: 수산동식물을 포획(捕獲)·채취(採取)하거나 양식하는 산업,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

6. “어촌“이란 하천·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가. 읍·면의 전 지역

나. 동의 지역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
□ 농어촌정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6. “농어촌 관광휴양사업“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
라. 농어촌민박사업: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(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)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·취사시설·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

제81조(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·육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·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농어촌의 자연환경, 영농활동,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
2.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
3.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·연구 및 홍보

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86조(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)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.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.